

##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안)

### 조합원 모집개요

-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공고 내용을 숙지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에서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 가입 자격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 자격조건 판정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입니다..

### 1

#### 주택조합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주체	시행사	140-82-81383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최양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 201호
자금관리신탁사	829-87-01357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김송규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2

#### 조합 설립인가번호 · 인가 일자 및 조합원 수

설립인가번호	인가 일자	조합원 수
2024-주택과-주택조합설립인가-1	2024년 10월 8일	213

### 3

####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 주택건설 대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목	, 도로, 답, 잡종지, 국공유지	
주택건설 대지면적	11,833㎡ (3,579.48평)	
건축면적	2,142.38㎡ (648.07평)	
연 면 적	지상층	29,543.43㎡ (8,936.89평)
	지하층	25,972.50㎡ (7,856.68평)
	합 계	55,515.93㎡ (16,793.57평)
건 폐 율	18.11% ( 30% 이하)	
용 적 률	249.67% (법정 250% 이하)	
규 모	지하 7층, 지상 18층~25층, 6개 동	
주차대수	462대 (법정 348대)	

※ 상기 면적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위치 및 대지면적은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사업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구분	주택건설 대지면적(m <sup>2</sup> )			토지사용권원 확보	토지매매계약 (한마음선원 포함)	합계 (국공유지 포함)
	사유지	국공유지	합계			
면적	11,145.00	688.00	11,833	9,594.86		
구성비	5.8%	94.2%	100.0%	81.1%		

**4 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 기간**

주택형	59m <sup>2</sup> A	59m <sup>2</sup> B	76m <sup>2</sup> A	합계
예정세대수	214	36	85	335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 허가 및 (건축 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 예정 기간: 2025년 4월 ~ 2027년 10월(실 착공일로부터 약 30개월)로 공정,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 기간**

- 모집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335세대)의 약00% 000세대 모집
- 모집 기간 : 예정된 추가모집세대수의 조합원모집 완료 시까지

주택형	모집비율	추가 모집 기간
추가 모집세대수	100세대	29.85%

• 추가모집 승인일부터 추가 조합원모집 완료 시까지로 하되 사업계획승인신청 전까지 모집함.

**6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 및 복리시설**

**세대당 공급면적**

주택 타입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계약면적(m <sup>2</sup> )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59m <sup>2</sup> A	59.98	22.02	82.00	4.35	56.63	142.98
59m <sup>2</sup> B	59.78	22.26	82.05	4.33	56.46	142.84
76m <sup>2</sup> A	76.02	26.54	102.56	5.51	71.79	179.86

※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건축 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음(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수와 각 주택 타입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부대 및 복리시설**

입주자 부대 및 복리시설	지상층	어린이집, 경비실
	지하층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상기 면적 및 시설 용도는 인·허가과정(건축 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구분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예정일	2025년 2월	2025년 6월	2027년 12월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완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정일은 인허가 과정, 공사 공정,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조합원 가입신청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조합원 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1.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구성원 전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2통 4.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 2통 5. 가족관계증명서(조합원 본인 기준으로 발급) 2통 6. 인감증명서 4통 7.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통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대리인 인감도장 2. 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신청일시	추가조합원 모집 기간 내	
신청장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 201호(석수동, 태양빌딩) ☎ 031-472-9981	

※ 상기 내용 이외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 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 및 납부 시기(일반조합원)

(단위:m<sup>2</sup>, 원)

전용 면적	동호구분	층별	업무대행비 (부가세포함)	조합원모집가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계약시	분담금총액 (업무대행비제외)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잔금
							조합 가입시		가입후 2개월이내	3회차 납부 후 2달이내	사업계획 승인 후						잔금
							3.0%	5.0%	5.0%	7.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사업 승인 시	+5개월	+5개월	+5개월	+5개월	+5개월	입주지정일			
59㎡A [24.81평]	101동 1호 101동 2호 104동 1호 104동 2호 105동 1호 105동 2호 106동 1호	2층	25,000,000	574,673,600	10,000,000	28,733,700	28,733,700	47,467,400	57,467,400	57,467,400	57,467,400	57,467,400	57,467,400	57,467,400	114,934,400		
		3층	25,000,000	586,654,700	10,000,000	29,332,700	29,332,700	4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117,330,800		
		4층	25,000,000	592,632,900	10,000,000	29,631,600	29,631,600	4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118,526,600		
		5~9층	25,000,000	598,635,900	10,000,000	29,931,800	29,931,800	4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119,727,100		
		10~14층	25,000,000	616,247,900	10,000,000	30,812,400	30,812,400	5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123,249,500		
		15~19층	25,000,000	624,880,300	10,000,000	31,244,000	31,244,000	5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124,976,300		
		20층이상	25,000,000	633,611,900	10,000,000	31,680,600	31,680,600	5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126,722,300		
59㎡A [24.81평]	103동 1호 103동 2호	3층	25,000,000	586,654,700	10,000,000	29,332,700	29,332,700	4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58,665,500	117,330,800		
		4층	25,000,000	592,632,900	10,000,000	29,631,600	29,631,600	4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118,526,600			
		5~9층	25,000,000	598,635,900	10,000,000	29,931,800	29,931,800	4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119,727,100			
		10~14층	25,000,000	616,247,900	10,000,000	30,812,400	30,812,400	5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123,249,500			
		15~19층	25,000,000	624,880,300	10,000,000	31,244,000	31,244,000	5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124,976,300			
		20층이상	25,000,000	633,611,900	10,000,000	31,680,600	31,680,600	5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126,722,300			
		59㎡A [24.81평]	102동 1호	4층	25,000,000	592,632,900	10,000,000	29,631,600	29,631,600	4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59,263,300	118,526,600	
5~9층	25,000,000			598,635,900	10,000,000	29,931,800	29,931,800	4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59,863,600	119,727,100			
10~14층	25,000,000			616,247,900	10,000,000	30,812,400	30,812,400	5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61,624,800	123,249,500			
15~19층	25,000,000			624,880,300	10,000,000	31,244,000	31,244,000	5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62,488,000	124,976,300			
20층이상	25,000,000			633,611,900	10,000,000	31,680,600	31,680,600	5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63,361,200	126,722,300			
59㎡B [24.82평]	102동 2호 102동 3호			1층	25,000,000	563,042,500	10,000,000	28,152,100	28,152,100	46,304,300	56,304,300	56,304,300	56,304,300	56,304,300	56,304,300	112,608,200	
				2층	25,000,000	575,005,700	10,000,000	28,750,300	28,750,300	47,500,600	57,500,600	57,500,600	57,500,600	57,500,600	57,500,600	115,000,900	
		3층	25,000,000	586,993,800	10,000,000	29,349,700	29,349,700	48,699,400	58,699,400	58,699,400	58,699,400	58,699,400	58,699,400	117,398,600			
		4층	25,000,000	592,975,400	10,000,000	29,648,800	29,648,800	49,297,500	59,297,500	59,297,500	59,297,500	59,297,500	59,297,500	118,595,300			
		5~9층	25,000,000	598,981,900	10,000,000	29,949,100	29,949,100	49,898,200	59,898,200	59,898,200	59,898,200	59,898,200	59,898,200	119,796,300			
		10~14층	25,000,000	616,604,100	10,000,000	30,830,200	30,830,200	51,660,400	61,660,400	61,660,400	61,660,400	61,660,400	61,660,400	123,320,900			
		15~18층	25,000,000	625,241,500	10,000,000	31,262,100	31,262,100	52,524,200	62,524,200	62,524,200	62,524,200	62,524,200	62,524,200	125,047,900			
76㎡ [31.03평]	103동 3호 103동 4호 106동 2호 106동 3호	1층	25,000,000	703,835,200	10,000,000	35,191,800	35,191,800	60,383,500	70,383,500	70,383,500	70,383,500	70,383,500	70,383,500	140,767,100			
		2층	25,000,000	718,789,900	10,000,000	35,939,500	35,939,500	61,879,000	71,879,000	71,879,000	71,879,000	71,879,000	71,879,000	143,757,900			
		3층	25,000,000	733,775,700	10,000,000	36,688,800	36,688,800	63,377,600	73,377,600	73,377,600	73,377,600	73,377,600	73,377,600	146,754,900			
		4층	25,000,000	741,253,100	10,000,000	37,062,700	37,062,700	64,125,300	74,125,300	74,125,300	74,125,300	74,125,300	74,125,300	148,250,600			
		5~9층	25,000,000	748,761,500	10,000,000	37,438,100	37,438,100	64,876,200	74,876,200	74,876,200	74,876,200	74,876,200	74,876,200	149,751,900			
		10~14층	25,000,000	770,790,300	10,000,000	38,539,500	38,539,500	67,079,000	77,079,000	77,079,000	77,079,000	77,079,000	77,079,000	154,158,300			
		15~19층	25,000,000	781,587,500	10,000,000	39,079,400	39,079,400	68,158,800	78,158,800	78,158,800	78,158,800	78,158,800	78,158,800	156,317,100			
20층이상	25,000,000	792,508,800	10,000,000	39,625,400	39,625,400	69,250,900	79,250,900	79,250,900	79,250,900	79,250,900	79,250,900	158,501,700					

- 추가모집 지주조합원의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료는 기존 가입 지주조합원 가입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상기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 시기는 사업계획의 변동, 사업 기간, 금융대출 여건의 변동, 토지대 및 공사비 증감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음. (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sup>2</sup> x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 모집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별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상기 모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은 개별부담으로 한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파트에 대한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공부 정리에 의한 대지면적 확정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또는 1, 2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모집금액을 책정함.
- ※ 상기 모집금액은 조합업무 대행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으며,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중도금 이자 후불제).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또한,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대상 및 모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계약철회(가입 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 제외), 조합탈퇴,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 교체 시 등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 시에도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담금 납부방법 및 자금관리의 주체

구분	조합원 가입 계약 시	조합가입 후 1개월 이내	비고
업무대행료	납부		
계약금 (%)	1회차 (조합가입금)	납부	
	2회차		납부
	3회차		납부

	4회차		3회차 납부 후 2달이내
중도금( %)			사업승인 후 납부일정표에 따라 납부
잔금( %)			입주 시 납부

- ※ 계약금 2회차, 3회차는 모집 조합원 개별 신용대출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하며, 대출 진행 확정시 대출 일정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액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 ※ 본 납부 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며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금관리 신탁사 대신자산신탁(주)이 자금 일체를 관리합니다.
- ※ 분담금 입금은 아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의뢰인 난에 반드시 조합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 입금자명: 홍길동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조합원가입금	농협	335-0088-1891-03	대신자산신탁(주)
조합원분담금		335-0088-1903-13	
업무대행비		335-0088-1899-93	

**10 조합원 당첨자의 발표일시 · 장소 및 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① 조합원 가입신청 시 제출된 자료(2024년 8월 22일 기준)를 근거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 ② 서류심사 통과한 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③ 조합가입금 및 업무대행료 납부 확인 후 조합원 가입 계약서 발행
동호수 지정 방법	계약시 동·호수 지정 (안양시 협의사항)
조합원 가입 체결 장소	조합홍보관 (조합 사무실)
유의사항	① 상기 당첨자(조합원 가입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추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조합원자격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계약은 취소됩니다. ②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 시 지정된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이종 당첨자 또는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는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및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주택법상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2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 유의사항**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①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②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③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 피선출권은 조합원 본인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가족 포함)의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 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합원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사업대상지 내 토지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지역주택조합 모집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탈퇴조건 및 추가분담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 광고 등 각종 인쇄물 및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컷, CG,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소비자의 계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의할 수 있으며,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광역위치도 등은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모집자료 상의 단위세대 평면도, 아이소 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확정은 사업계획승인 이후입니다..
-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기 바라며 본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개인 책임으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및 동 번호,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최초 모집 시)에 설치된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시공사의 표준 사양 변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예정 대상 면적별 세대수를 평균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 조합원 분담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은 세대별 공급금액에서 기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금액이며,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조합원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부지, 건축 규모, 단지 배치 및 세대별 공급면적 등의 변동, 사업 기간 및 기타의 사유로 사업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총회를 거쳐 조합원 분담금이 가감 조정될 수 있고 조합원은 이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분담금 추가납부 또는 환급방법은 조합 이사회에 위임하여 조합은 이사회에서 변경내역을 확정하여 조합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조합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또는 계약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폐기한다.

### 13 사업 주체 및 자금관리사

- 시행사: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 자금관리사: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조합 사무실(조합가입 계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 201호(석수동, 태양빌딩) ☎ 031-472-9981
- 모집문의: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주택법 및 관련 법규 시행에 따른 예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 지역주택조합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